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03 발의연월일: 2024. 11. 6.

발 의 자:추미애·권칠승·박은정

이재강ㆍ허 영ㆍ안호영

강유정 · 김남희 · 문대림

한준호 · 이훈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2항에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駐留)에 대한 동 의권을 가지도록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국방부가 개인단위 해외파병은 국회의 동의 없이 국방부장 관의 정책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을 개정해 훈령이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되는 상황이 발생함.

한편, 외국의 전시상황에 대한 '개인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의 해외파견'은 군인인 국민의 생명권과도 직결되므로 이는 훈령의 형식이 아닌 법률에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전중인 국가에 '개인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의 해외파견'을 할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

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등).

법률 제 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연합은 제외한다"를 "연합 등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할"을 "하거나, 개인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 나 연합을 생명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교전 중인 국가에 파견하고 자 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이	1
하 "평화유지활동"이라 한다)	
이란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	
사회가 채택한 결의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임명하	
는 사령관의 지휘하에 국제연	
합의 재정부담으로 특정 국가	
(또는 지역) 내에서 수행되는	
평화협정 이행 지원, 정전 감	
시, 치안 및 안정 유지, 선거	
지원, 인도적 구호, 복구·재	
건 및 개발 지원 등을 비롯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u>다만, 개</u>	<u><단서 삭제></u>
별 또는 집단의 국가가 국제	
연합의 승인을 받아 독립적으	
로 수행하는 평화유지 또는	
그 밖의 군사적 활동은 포함	
하지 아니한다.	
2. "파견부대"란 평화유지활동	2
에 참여하기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개인 단위	

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 나 <u>연합은 제외한다</u>)를 말한 다.

3. ~ 5. (생 략)

제6조(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 기의) ① 정부가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하여 국군부대를 해외에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 ③ (생 략)

<u>연합 등을 포함한다</u>	
3. ~ 5. (현행과 같음)	
제6조(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
의) ①	
<u>하거나, 개인단위로</u>	활
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
합을 생명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교전 중인 국가에 파견	하
고자 할	
② · ③ (현행과 같음)	